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98 발의연월일: 2022. 11. 17.

발 의 자 : 변재일 • 고용진 • 김철민

도종환 · 서영석 · 이개호

이성만 • 이장섭 • 임호선

정우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 청주시는 2012년 청원·청주 시군민협의회 합의와 최초 지방 자치단체 주민투표로 2014년 7월 출범하였고, 이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합 후 10 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에 특례 기한 만료가 도래함.

청주시는 그간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2012년 통합 당시 합의한 통합 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주요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동일 재정 특례를 받는 창원시의 경우, 5년을 연장하여 총 15년간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시도 재정지원 연장이 필요함.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을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	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	한 재정지원)
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	
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10년간</u>	<u>10</u>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	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u>년 12월 31일까지)</u> 매년 통합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	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여야 한다.	<u> 31일까지)</u>